

[ ] 하자심사  
[ ] 분쟁조정 사건통지서

받는 사람 (피신청인)	성명(상호)	
	주소	
사건 내용	사건 번호	제 호(접수 년 월 일)
	단지명	
	목적물 주소	
	신청인	
	신청요지	
사실조사 등	현장실사 및 검사 등의 일정은 답변서를 검토한 후 별도로 통지합니다.	

신청인이 위와 같이 사건을 신청하였기에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 필요)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고, 분쟁조정 경우에는 조정기일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·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 
2. 하자심사·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

청인

※ 유의사항

- 분쟁조정의 피신청인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. 만약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인 입주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정안을 결정합니다.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의 사건통지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(입주자 제외)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